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70

발의연월일: 2024. 8. 16.

발 의 자:김영배·박홍배·이병진

한병도 · 김태년 · 김영호

이학영 · 문금주 · 전현희

문정복 · 송기헌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국내공항 내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인 연예인에 대한 경호 과정에서 공항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들이 공항 내 시설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 란이 야기됨.

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하여도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 지 아니함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여,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이용객의 원활한 출입 및 통행을 보장하려는 것 임(안 제56조제6항제4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6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"제3호까지의"를 "제4호까지의"로 한다.

4.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(금지행위) ① ~ ⑤ (생	제56조(금지행위) ① ~ ⑤ (현행
략)	과 같음)
⑥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,	6
사업시행자등, 항행안전시설설	
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	
•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	
당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	
서는 아니 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
	행을 방해하는 행위
<u>4.</u> 그 밖에 제1호부터 <u>제3호까</u>	<u>5.</u> <u>제4호까</u>
<u>지의</u>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	지의
해당 시설의 이용이나 운영에	
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행위	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